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명예보상금 지급〉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53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4
2. 제정안의 논의 배경	5
3.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지급권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7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9
5.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	14
6. 관련 부처 의견	17
※ 참고자료	
1. 사이명턴 청문록 요약	19
2.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	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선원의원 등 20인
2. 발 의 일 : 2024. 6. 17.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이러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합당한 예우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명예보상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 라. 명예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명예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4년까지로 함(안 제6조).
- 바. 위원회는 명예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명예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명예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으로 함(안 제14조).

아.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 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조문의 본칙과 1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됨.

[제정안의 조문 구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자)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5조(명예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제6조(명예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7조(지급 결정 기한)
제8조(결정서 송달)
제9조(재심의)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명예보상금의 지급)
제11조(명예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2조(명예보상금의 환수)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제14조(소멸시효)
제15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제16조(벌칙)
<부 칙>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제정안의 논의 배경

- 정부는 구(舊)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전군인보수법”이라 함)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근거 규정¹⁾에도 불구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1964. 7. 28.)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²⁾
- 이에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명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국가가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과소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을 침해하였더라도 이들이 월남전 참전을 마친 날로부터 약 40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음.³⁾

1) 중전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 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이하 “手當”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설령 원고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기하여 별도의 전투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전을 마친 날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520).

- 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참전군인들에게 명예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월남전 참전 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와 국가의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3.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지급권 인정 여부

-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투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전투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월남전 참전군인과 같이 해외에 파견되어 전투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전투근무수당 지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이를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법제처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 전쟁(월남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및 판례]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제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249, 2013.1.22.)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 <u>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임.</u> <u>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u>
서울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51392 전투수당등 판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u>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u>

※ 자료: 법제처 법령 해석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인용 발췌

- ☐ 즉,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월남전 참전군인은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상 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인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전투종사자’로 인정될 수 없음.
- ☐ 이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는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이 인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

□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 지급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전투에 참가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음.

그러므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방부 입장은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대신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해외파전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을 제정(1964. 7. 28.)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보상을 하였다는 입장임.

「해외파전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이하 “手當”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기간중 1일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出張을 위한 歸國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지급일) 수당은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 수당은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본국거주자에게 그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외국에 파견된 부대의 장은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군인보수법에 의한 국내의 제수당의 지급절차에 준하여 제증빙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다만, 종전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제정(1965. 1. 27.)됨에 따라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은 폐지되어 ‘특수근무수당’을 대체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되었음.⁴⁾

「군인보수법 시행령」 제13조 (특별급여의 분류) 특별급여는 위험수당·기술수당·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4. 특수지근무수당

나. 국외근무수당

(1) 해외파견근무수당

□ 이에 대해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당초 미국 측이 참전군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제공한 수당 중 일부만 참전군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부는 참전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2005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참전수당과 관련된 문서 1만 7,000여매의 분량을 검증(2005. 4월 ~ 6월)

4) 군인보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045호, 1965.1.27.>

② (폐지법령) 항공수당급여규정·낙하산강하위험수당급여규정·함정근무수당급여규정·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급여규정·기갑근무자·전방초소근무자 및 훈련생수당급여규정·유격훈련수당급여규정·학생군사훈련수당급여규정, 비무장지대근무수당급여규정·레이다벽지 및 고지근무수당급여규정 및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하였으며, 미 의회의 월남전 관련 청문록에 기록된 수당 자료와 정부의 해외파견근무수당 규정, 참전용사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을 비교 시 관련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⁵⁾

□ 월남전 참전군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도 “월남전 참전군인이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전투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전투수당과는 별도의 전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⁶⁾한 바 있음.

□ 실제 월남전 참전군인은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계급별로 1일 7.0\$ (대령)~0.6\$ (이등병)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해당 규정이 폐지된 후 제정된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라서는 계급별로 일 15.0\$ (소장)~1.0\$ (이등병)의 해외파견수당을 지급받았음.

5) 국방부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군인은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총 130.2백만달러가 참전군인들에게 지급되었음.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56520 판결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단위: 1일, \$)

구 분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군인보수법 시행령 (해외파견근무수당)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중 장					10.00
소 장				15.00	8.00
준 장			10.00	10.00	7.00
대 령	7.00	6.50	6.50	6.50	6.50
중 령	6.50	6.00	6.00	6.00	6.00
소 령	5.50	5.50	5.50	5.50	5.50
대 위	5.00	5.00	5.00	5.00	5.00
중 위	4.50	4.50	4.50	4.50	4.50
소 위	4.00	4.00	4.00	4.00	4.00
준 위	-	-	3.50	3.50	3.50
상 사	2.50	2.50	2.50	2.50	2.50
중 사	2.00	2.00	2.00	2.00	2.00
하 사	1.50	1.50	1.50	1.90	1.90
병 장	1.20	1.20	1.20	1.80	1.80
상등병	1.00	1.10	1.10	1.50	1.50
일등병	0.80	1.00	1.00	1.35	1.35
이등병	0.60	-	1.00	1.25	1.25

※ 자료: 국방부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종전 군인 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지 않은 보상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⁷⁾

□ 이에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의 해외파전군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서울고등법원도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해외에 파병되어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지급되던 각종 수당 외에 해외군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국내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 대하여 전투군무수당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6.7. 2015누66549 전투수당 등 판결).

5.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

-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군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1780)이 발의된 바 있음.
- 동 법률안은 두 차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 되었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2015.11.26.)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군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363) 등 총 4건의 법률안⁸⁾이 발의되었음. 해당 법률안들은 총 네 차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되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제19대 국회에서와 같이 해당 법률 안들에 대해서는 공청회(2017.2.13.)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도 「월남전참전군인전투군무보상특별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627) 등 총 4건의 법률안⁹⁾이 발의되었음. 해당

8)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군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36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군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374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군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군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606)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5811)

9) 「월남전참전군인전투군무보상특별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627)

「월남전 참전군인보상에관한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208)

「월남전참전군인의전투군무수당미지급관련진상규명및전투군무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212)

「월남전참전군인의전투군무수당미지급관련진상규명및전투군무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134)

법률안들은 총 두 차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제20대 국회에서와 같이 해당 법률안들에 대해서도 공청회(2022.1.5.)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상기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같이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투군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 참전군인에게는 해외파견군무수당 등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으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 참고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 특별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당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국방부와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의 입장 비교]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국방부
○ 당시 헌법 제75조(현행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 「군인보수법」(1963.5.1. 제정 및 시행)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	○ 전투군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월남전이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군무수당)의 지급요건인 대한민국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임. ○ 또한, 시행령을 미제정하였다고 하나, 「군인보수법 시행령」은 월남전 당시에도 존재(‘65.1.27. 제정)하였으며, 당시의 「군인보수법 시행령」에도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국방부
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군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시행령 미제정(입법부 작위)은 참전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	전투군무수당에 관한 조항은 없었음. ○ 군인보수법에 명시된 ‘각령’은 전시 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하며, 전시대기법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에 발효되는 것이므로, 전투군무수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함.
○ ‘봉급’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가수준과 군인봉급표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한국군인에게 지급한 돈이고, ‘해외군무수당’은 미국이 주월 한국 전투장병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므로 서로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대상임.	○ 군인의 봉급 및 수당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당시 지급된 해외파견군무수당은 국내법령인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군무수당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였음. ○ 해외파견군무수당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 것임.
○ 국방부(인사국)에서 합참(기획국)으로 발송한 공문(1969.4.28.)을 보면, 파월 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군무수당에 부과하여 전투군무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국방부 인사국에서 작성한 문서는 ‘파월장병 처우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 문서에도 “파월 한국 장병은 전투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현 국내 실정이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전투군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더불어 “주월 한국군의 전투 군무위험 수당으로서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현 파월 군무수당에 부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대미 절충할 것을 건의함”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임.

6. 관련 부처 의견

□ 국방부는 제정안에 따른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신설(안제4조)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을 때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훈심사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고,¹⁰⁾ 명예보상금 산정을 기 지급했던 ‘해외파견근무수당’을 기준으로 지급(안제5조)하는 것은 중복 보상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상금 지급은 ‘보훈심사위원회’ 등 기존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되, 현재 미국, 호주 등 타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등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별도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기획재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 해외파견근무수당¹¹⁾은 충분한 보상으로 기 지급되었고, 베트남 전쟁을 포함한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¹²⁾을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월 15,000원 지급('64년 병장 봉급 월 400원)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월 42만원¹³⁾)하고 있으므로 유사·중복 소지가 있는 명예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임.

□ 법무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특수근무수당’ 또는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의한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된바 있음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명예보상금’이 전투근무수당과 유사한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뒤 추가로 보상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의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임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훈심사위원회¹⁴⁾ 등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2만원으로 한다.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 참고자료

1. 사이밍턴 청문록 요약¹⁵⁾

(단위: 1일, \$)

구분	건설지원단 파병		수도사단 파병	제9사단 파병		최종 시행액	월(30일) 기준액
	최초책정 (64. 12. 25)	계급 추가#1 (65. 1. 15)	계급 추가#2 (65. 10. 11)	계급 추가#3 (66. 7. 1)	하위직 인상 (66. 7. 1)		
중장				10.00		10.00	300
소장			7.50	8.00		8.00	240
준장		7.00				7.00	210
대령	6.50					6.50	195
중령	6.00					6.00	180
소령	5.50					5.50	165
대위	5.00					5.00	150
중위	4.50					4.50	135
소위	4.00					4.00	120
준위		3.50				3.50	105
상사	2.50					2.50	75
중사	2.00					2.00	60
하사	1.50				1.90	1.90	57
병장	1.20				1.80	1.80	54
상병	1.10				1.50	1.50	45
일병	1.00				1.35	1.35	40.5
이병					1.25	1.25	37.5

※ 자료: 국방부

15) 1970년 2월 24일 美 상원의교위원회의 월남전 참가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및 수당에 관한 청문회를 기록한 자료

2.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

<u>주월 한국군의 혜택</u> 1. 급 여: 가. 해외 근무 수당지급 <u>계급별 월간 수당액</u> 단위: \$ <table> <tr> <th>계 급</th><th>수 당 액</th><th>계 급</th><th>수 당 액</th></tr> <tr> <td>중 장</td><td>300</td><td>준 위</td><td>105</td></tr> <tr> <td>소 장</td><td>240</td><td>상 사</td><td>75</td></tr> <tr> <td>준 장</td><td>210</td><td>중 사</td><td>60</td></tr> <tr> <td>대 령</td><td>195</td><td>하 사</td><td>57</td></tr> <tr> <td>중 령</td><td>180</td><td>병 장</td><td>54</td></tr> <tr> <td>소 령</td><td>165</td><td>상 병</td><td>45</td></tr> <tr> <td>대 위</td><td>150</td><td>일 병</td><td>40.5</td></tr> <tr> <td>중 위</td><td>135</td><td>이 병</td><td>37.5</td></tr> <tr> <td>소 위</td><td>120</td><td></td><td></td></tr> </table> - 36 -				계 급	수 당 액	계 급	수 당 액	중 장	300	준 위	105	소 장	240	상 사	75	준 장	210	중 사	60	대 령	195	하 사	57	중 령	180	병 장	54	소 령	165	상 병	45	대 위	150	일 병	40.5	중 위	135	이 병	37.5	소 위	120		
계 급	수 당 액	계 급	수 당 액																																								
중 장	300	준 위	105																																								
소 장	240	상 사	75																																								
준 장	210	중 사	60																																								
대 령	195	하 사	57																																								
중 령	180	병 장	54																																								
소 령	165	상 병	45																																								
대 위	150	일 병	40.5																																								
중 위	135	이 병	37.5																																								
소 위	120																																										
나. 군로 소득세의 면제 <u>계급별 면제액</u> 단위: \$ <table> <tr> <th>계 급</th><th>면 제 액</th><th>계 급</th><th>면 제 액</th></tr> <tr> <td>중 장</td><td>16,557</td><td>대 위</td><td>1,63</td></tr> <tr> <td>소 장</td><td>11,009</td><td>중 위</td><td>1,12</td></tr> <tr> <td>준 장</td><td>8,676</td><td>소 위</td><td>96</td></tr> <tr> <td>대 령</td><td>6,762</td><td>준 위</td><td>1,27</td></tr> <tr> <td>중 령</td><td>4,338</td><td>상 사</td><td>94</td></tr> <tr> <td>소 령</td><td>3,036</td><td>중 사</td><td>77</td></tr> </table> (주): 1. 중간 호봉 기준 2. 병은 소득세 불공제 2. 연 급: 복무기간을 3배로 가산 3. 재해보상금: 가. 1급: 봉급의 48배(국내의 3.2배) - 37 -				계 급	면 제 액	계 급	면 제 액	중 장	16,557	대 위	1,63	소 장	11,009	중 위	1,12	준 장	8,676	소 위	96	대 령	6,762	준 위	1,27	중 령	4,338	상 사	94	소 령	3,036	중 사	77												
계 급	면 제 액	계 급	면 제 액																																								
중 장	16,557	대 위	1,63																																								
소 장	11,009	중 위	1,12																																								
준 장	8,676	소 위	96																																								
대 령	6,762	준 위	1,27																																								
중 령	4,338	상 사	94																																								
소 령	3,036	중 사	77																																								
나. 2급: 봉급의 32배(국내의 3.2배) 나. 3급: 봉급의 24배(국내의 3.4배) 라. 재해 보상금과 동액의 자택금 지급 4. 급식: 1일 급식비 532원 41전(국내의 7.6배) 5. 전 급: 가. 하사관: 연간 316명을 할당받아 복전 우대 다. 병 : T/O에 구애없이 전급 최저 복무연한 경과자 전원 전급 6. 상 훈: 가. 한국훈장: 14명당 1개 나. 외국훈장: 35명당 1개 7. 휴 가: 가. 본국 특별휴가 (1) 1년간 복무연장자: 20일간 (2) 유 공 자: 20일간 (3) 정원휴가: 15일간 나. 휴 양: 중령급 이상 유공장교의 "방목" 휴 양 8. 현지취업: 1968. 7. 10까지 1,001명 - 38 -		<u>주월 한국군의 신</u> 1.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국가의 를 선양하는 역군이 되자 2. 우리는 화랑의 자손이다. 싸움에 는 화랑이 되자. 3. 우리는 자유민이다. 공동의 적인 국 자유를 수호하는 투사가 되자. 4.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의 대표이다. 보이자. 5. 우리는 인치단절하여 질승의 신념, 완수하자. 6. 우리는 사람과 친절로서 봉사하여 이 되자. - 39 -																																									

※ 자료: 국방부